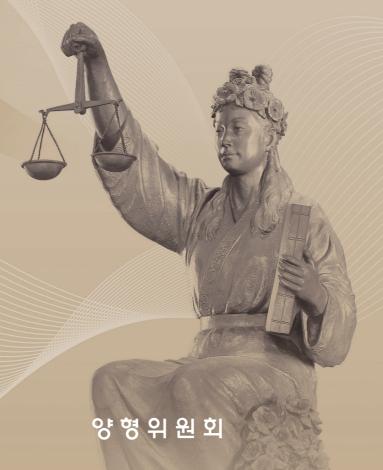
2024

Sentencing

Guidelines

양형기준

강도, 공갈,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관세, 교통,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뇌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도주·범인은닉, 디지털 성범죄, 마약, 명예훼손, 무고,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 사행성·게임물, 살인, 석유사업법위반, 선거, 성매매, 성범죄, 손괴, 스토킹, 식품·보건, 약취·유인·인신매매, 업무방해, 위증·증거인멸,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장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조세, 주거침입, 증권·금융, 지식재산·기술침해, 체포·감금·유기·학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폭력, 환경, 횡령·배임 범죄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20. 9. 14. 수정, 2020. 10.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①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 준특수강도(형법 제335조),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강도 치사(형법 제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누범강도 등(특정범죄가 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기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 행 · 협박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i>/</i>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 · 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행위자 <i>/</i>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 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 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약 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